

기부금 영수증

일련번호 231214171460000001

1. 기부자 (소득공제자료 제출시 동일한 기부내역을 확인하신 후 한장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)

성명(법인명)	주식회사 미래전람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201-86-27800
후원자번호	20233084422		
주소	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(성수동2가) 에이동 1611,1612호		

2. 기부금 단체

단체명	어린이재단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202-82-55238
소재지	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5 어린이재단빌딩 1101호		

3. 기부금 모집처(언론기관등)

단체명		사업자등록번호	
소재지			

4. 기부내용

기부유형/코드	접수일자	접수금액	적요	기부유형/코드	접수일자	접수금액	적요
지정기부/40	2023/12/14	6,000,000	후원금				
합 계				₩ 6,000,000			

「소득세법」 제34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·제55조의 4 및 「법인세법」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2월 14일 신청인 (인)

2023/01/01 - 2023/12/14 기간동안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23년 12월 14일 기부금 수령인



- "2. 기부금 단체"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 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생해야 합니다. (예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50조제1항제5호,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1항)
- "3. 기부금 모집처(언론기관 등)"는 방송사, 신문사,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, 기부금 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.
- "4. 기부내용"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

기부금 구분	유형	코드
「소득세법」 제 34조제2항,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	법정	10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기부금	정치자금	20
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(종교단체 기부금 제외),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	지정	40
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	종교단체	41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	우리사주	42
필요경비(송금)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	공제제외	50

- "4. 기부내용"의 적요란에는 "금전기부"의 경우에는 공란, "현물기부"의 경우에는 "현물"로 적습니다.